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제352호
- 다. 제출일자: 2022. 10. 17.
- 라. 회부일자: 2022. 10. 21.

2. 제 안 사 유

- 양천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2023년 3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할 위탁 운영 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위탁사무명: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

나. 민간위탁 필요성 및 추진 근거

-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처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다. 위탁사무 내용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
- 소각,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중온수 및 전력 생산·판매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일반사무처리
-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

라. 시설 개요

- 시설명: 양천자원회수시설
-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 부지면적: 16,914 m^2

- 시설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400톤/일(200톤/일×2기)
- 처리권역: 3개 자치구(양천, 강서, 영등포)
- 주용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소각열 회수 자원화
- 주요장비: 소각설비, 소각재처리설비,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마. 위탁기간: 3년('23. 4. 1. ~ '26. 3. 31.)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96.03.01.~'99.03.03. (3년, 선경건설(주))
· 2차 : '99.04.01.~'02.03.31. (3년, SK건설(주))
· 3차 : '02.04.01.~'05.03.31. (3년, 한국시거스(주))
· 4차 : '05.04.01.~'08.03.31. (3년, 한국시거스(주))
· 5차 : '08.04.01.~'11.04.30. (3년, 한국시거스(주))
· 6차 : '11.05.01.~'13.12.31. (3년, 한국시거스(주))
· 7차 : '14.01.01.~'17.03.31. (3년, 한국시거스(주))
· 8차 : '17.04.01.~'20.03.31. (3년, 한국시거스(주))
· 9차 : '20.04.01.~'23.03.31. (3년, 환경에너지솔루션(주))
※ 한국시거스(주) 인수합병으로 사명 환경에너지솔루션(주) 변경(2022.1.)

바. 수탁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2. 10. 10.)

사. 소요예산(비정산비 기준): 18,155백만원('23.4.~'26.3.)

(1차년도: 5,874백만원, 2차년도: 6,050백만원, 3차년도: 6,231백만원)

아. 기대효과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 전문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23.3.31.)로 인한 재위탁(공개모집)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 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검토 의견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1)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1)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기업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2]

강남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및 열생산
----------	------------------

□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제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시설 위치도와 제7호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1. 위탁사무명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3. 위탁사무 내용 |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 5. 민간위탁기간 | 6. 수탁자 선정방식 |
|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은 2022년 9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²⁾으로 심의하였음.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공모)사업의 경우,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2) 2022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자원순환과)(조직담당관-27419, '22.10.10.)

<2022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비고
자원순환과	양천자원 회수시설	예산지원형 /재위탁(공모)	3년	적정 (권고)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필요

□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상 개선요청사항 요약

- **조직 및 인력 운영:** 조직 구성원 수에 있어서 일부 팀의 경우 20인 또는 30인(관리팀 20인, 기술팀 5인, 운전팀 30인, 정비팀 9인 등)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팀제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는바, 적절한 조직진단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탁 기간에 인사평가 등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미시행으로 부정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19년까지는 인사평가를 시행하였으나 노동조합 결성 후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바,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경고 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비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 즉각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임기응변식 대응보다는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를 포함한 근원적인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소각시설 운영:** 사업 기간 3년 동안 소각 목표량 대비 평균 소각처리량 비율은 96.5%로 서울시 소재 타 소각시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달성하였음. 반면에 질소산화물(NO_x) 평균 배출농도가 최근 기준치 이내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배출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종합 의견(결론)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서류가 추후 제출된 점을 제외하고는 절차와 내용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직 운영,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시설 가동률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재위탁 사업자 선정 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아울러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